

|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 |
|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|
| <br>금융위원회 | <h1>보도자료</h1>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<br>금융감독원 |
|  | <b>보도</b>     | <b>2018.4.3.(화) 석간</b> | <b>배포</b> |  |

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|
| <b>책 임 자</b> | 금융위 감독제도팀장<br>이 동 엽(02-2100-2591)   | <b>담 당 자</b> | 이 영 평 사무관<br>(02-2100-2592)<br>김 동 현 사무관<br>(02-2100-2593) |
|              | 금융위 지배구조팀장<br>박 재 훈(02-2100-2520)   |              | 유 승 은 사무관<br>(02-2100-2521)<br>반 준 성 사무관<br>(02-2100-2525) |
|              | 금감원 금융그룹감독실장<br>서 정 호(02-3145-8200) |              | 박 상 원 팀 장<br>(02-3145-8204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## 제 목 : 「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」 초안 마련

◇ '금융그룹 감독방안'(18.1.31일)의 후속조치로서 모범규준 초안 마련 → 의견수렴 절차(4~6월)를 거쳐 7월부터 시범적용

### 1. 개요

□ '18.1.31일 발표한 「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도입방안」의 후속 조치로서 통합감독 시범적용에 필요한 모범규준 초안을 마련

○ 모범규준의 주요 내용은 Joint Forum 감독원칙, EU 감독지침, 독일 금융그룹감독법 등 금융그룹 감독 관련 국제규범을 참고

※ 감독대상 금융그룹(잠정)인 삼성, 한화, 교보생명, 미래에셋, 현대차, DB, 롯데 7개 금융그룹에 대해서는 3.30일 그룹별 공문 발송을 통해 모범규준(초안) 既 공개

## II. 모범규준 주요 내용

### 1. 금융그룹 위험관리체계

□ **(대표회사의 선정)** 대표회사는 감독대상 금융그룹 지정시 함께 지정되며, 다른 사정\*이 없는 한 **그룹내 최상위 금융회사**로 정함

\* ① 최상위 금융회사가 불분명한 경우, ② 최상위 금융회사가 제 역할을 하기 곤란한 경우, ③ 금융그룹의 요청으로 달리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

□ **(대표회사의 역할)** 대표회사는 감독대상 금융그룹을 대표하여 그룹 위험관리에 관한 제반 업무를 수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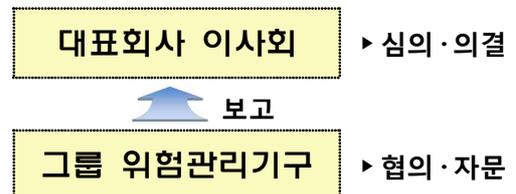
○ 대표회사는 그룹 위험관리업무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 소속 금융회사에 대한 자료요구권 등 적절한 권한을 갖추어야 함

#### < 대표회사의 주요 역할 >

- ① 그룹 위험관리의 기본방침 및 전략의 수립·운영
- ② 자본적정성, 내부거래, 위험집중, 동반부실위험 등 금융그룹의 건전성 관리
- ③ 금융그룹의 주요 현황, 그룹 위험관리체계, 주요 위험요인의 보고·공시 등

□ **(그룹 위험관리체계)** 대표회사 이사회를 최상위 의결기구로 규정하고, 이를 보좌할 **그룹 위험관리기구\***를 지정토록 함

\* 그룹 실정에 맞게 위험관리협의회, 대표회사 이사회내 위험관리위원회 또는 대표회사 위험관리책임자 중 선택



## 2. 금융그룹 건전성 관리

- **(그룹위험의 유형)** 금융그룹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으로 점검·평가·관리하여야 할 주요 그룹위험의 세부사항을 규정

### < 점검대상 주요 그룹위험 >

- ① **자본적정성:** 금융계열사간 자본의 중복이용, 내부거래·위험집중에 따른 손실 가능성, 동반부실위험 등을 고려, 건전성 유지에 필요한 필요최소자본을 산정
- ② **내부거래 및 위험집중:** 소속회사간 내부거래 및 그룹 위험집중이 금융그룹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, 거래유형별 손실허용한도를 설정
- ③ **위험의 전이:** 비금융계열사 등의 재무·경영위험이 금융그룹의 부실로 전이 될 수 있는 위험(동반부실위험)을 평가·통제

- **(그룹위험 실태평가)** 금감원이 금융그룹의 그룹위험 현황 및 관리실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함\*

\* (실태평가요소) ① 그룹 위험관리체계의 적정성, ② 금융그룹 자본의 적정성, ③ 내부거래·위험집중의 적정성, ④ 동반부실위험 관리의 적정성

- **(위험관리조치)** 금융그룹은 위험평가 결과 나타난 취약성을 반영하여, 관련위험의 축소, 필요자본 조정 등 필요한 위험관리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 (☞ 참고 1)

## 3. 금융그룹에 대한 감독 등

- **(금융그룹 감독 협의체)** 효율적인 금융그룹 감독을 위해 금융위·금감원 관계 부서로 감독 협의체를 구성 (☞ 참고 2)

\* 금융위 부위원장이 주재하는 「금융그룹 감독 협의체」에서 그룹 감독정책 등 주요사항을 협의하고, 감독대상 금융그룹별로 감독부서 실무협의체를 구성·운영

- **(보고·공시)** 금융그룹이 보고·공시하여야 할 그룹위험 관리 현황의 주요 사항\*을 규정

\* ① 금융그룹 소유·지배구조 등 주요현황, ② 그룹 위험관리체계 관련 사항, ③ 그룹 자본적정성 등 재무건전성 관련 사항, ④ 그룹 내부거래·위험집중 관련 사항 등

- (건전경영지도) 금융위는 그룹위험 관리실태가 취약한 금융 그룹에 대하여 위험관리 개선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

< 위험관리 개선조치의 발동요건 및 권고조치(안) >

| 구 분 | 발동요건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권고조치  |
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1단계 | ▶ 그룹위험 관리실태, 자본적정성 등의 적정 수준 미달 | ▶ 경영개선계획* 수립<br>* ① 자본의 확충, 위험자산의 축소<br>② 내부거래 축소, 위험집중 분산<br>③ 그룹 위험관리체계의 개선<br>④ 비금융계열사와의 출자·자금거래 중단·해소 |
| 2단계 | ▶ 개선계획 불이행, 그룹위험의 금융시장 안정 저해   | ▶ 금융그룹 명칭의 사용중지<br>▶ 동종금융그룹으로의 전환   |

### III. 향후 일정

- 금번 공개된 초안에 대한 향후 3개월간의 사전 의견수렴을 거쳐, 6월 중 모범규준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

\* 금년 7월 제도의 시범적용에 앞서 충분한 준비가 갖춰질 수 있도록, 통상적인 절차(사전예고기간 20일) 외의 사전 의견수렴(Consultation) 절차를 추가 진행

- 아울러, 「금융그룹 통합감독법(안)」도 금년 중 국회제출을 목표로 병행하여 마련해 나갈 계획

- 동 규준은 관련 법령이 제정되기 전까지 금융그룹의 위험관리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지도기준(Guideline)으로 활용될 것이며

- 위험관리 개선조치, 공시 등 규제성격의 규정은 제도의 시범 적용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임의적 권고사항으로 운영할 예정

<첨부>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모범규준 초안

| 그룹위험의 유형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점검대상 위험   | 자본규제 방식(안)  | 참고 사례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|---|
| <p>❶ 자본의 손실흡수능력 제약</p>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자본의 중복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금융계열사간 출자</li> <li>- 상호·순환출자</li> </ul> </li> <li>▶ 그룹간 교차출자</li> <li>▶ 차입을 통한 자본확충</li> </ul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적격자본에서 차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적격자본 - 중복계상자본</li> </ul> </li> </ul>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EU 감독지침(FICOD) Annex I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Commission Delegated Regulation(EU) No. 342/2014 §3*, Annex(산식)</li> </ul> </li> <li>* 내부거래에 따른 자본 중복이용 제거</li> </ul>  |
| <p>❷ 위험집중 (Risk Concentration)</p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대주주 익스포져</li> <li>▶ 산업별 위험편중</li> <li>▶ 내부거래 의존도</li> </ul>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필요자본에 가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적정수준 초과분에 대해 비례가산</li> </ul> </li> </ul> $: (\text{측정위험} - \text{적정수준}) \times \alpha$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정량위험 평가방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보험 (국내 RBC) : 비금융 종속·관계사 출자분 가산방식 (15%, 60%)<sup>1)</sup></li> <li>② 은행 (바젤 III) : 비금융자회사 출자분 가산방식 (15%, 60%)<sup>1)</sup></li> <li>③ 독일 금융그룹감독법 (FKAG) : 위험집중·내부거래 한도초과분 자본확충 방식<sup>2)</sup></li> </ul> </li> </ul> |
| <p>❸ 그룹내 전이위험 (Risk Contagion)</p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그룹 위험관리체계의 적정성 (governance structure)</li> <li>▶ 비금융부문으로부터의 부실 전이위험 (동반부실위험)</li> </ul>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필요자본에 가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: (총자산 또는 자기자본) × <math>\beta_i</math></li> </ul> </li> </ul> <p>* <math>\beta_i</math> : 그룹위험 관리실태 평가 등급에 따라 차등 가산</p> <p>※ 운영위험 자본규제 방식 등 참고</p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비정량위험 평가모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경기대응 완충자본 : 위험가중자산의 0~2.5% 가산</li> <li>② 운영위험 : 영업규모에 따라 평균이익의 일정비율 부과</li> </ul> </li> </ul> 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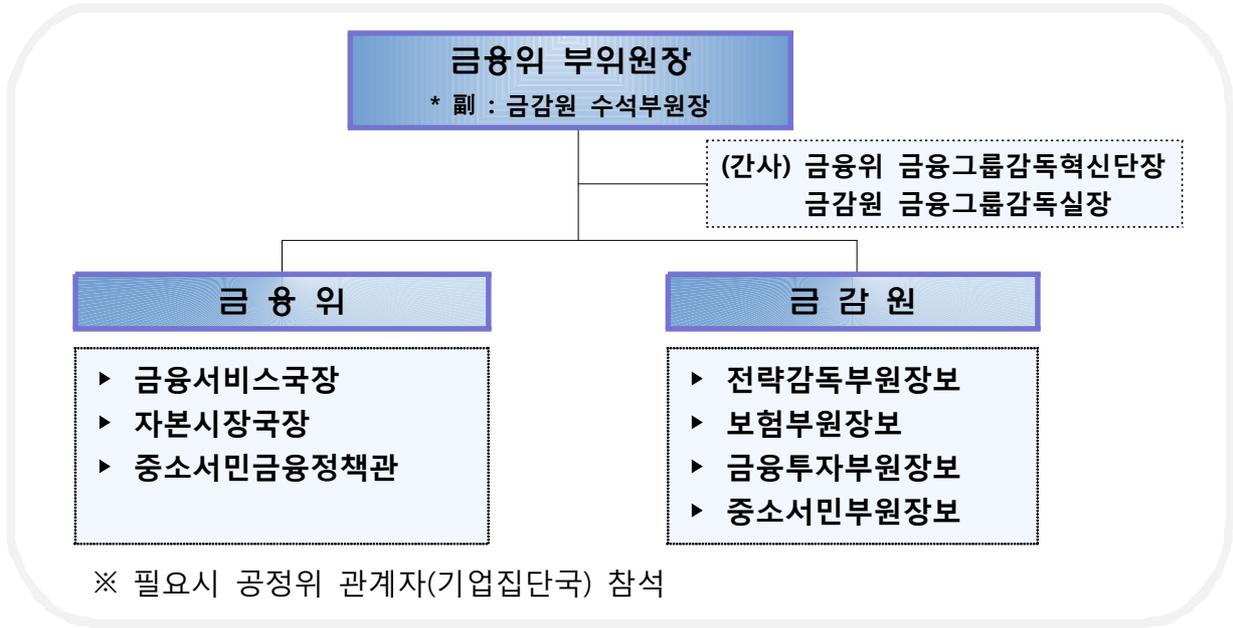
- 1) 아래 ①, ② 중 큰 금액을 전액 필요자본에 가산
- ① 개별 비금융사 출자분 중 은행 또는 보험사 자기자본의 15% 초과분
  - ② 전체 비금융사 출자분 중 은행 또는 보험사 자기자본의 60% 초과분
- 2) 독일 연방청은 금융그룹의 위험집중·내부거래 수준이 중요한 것으로 간주되는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 금융그룹의 모회사에 대하여 해당 초과금액을 자기자본으로 충당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(FKAG §23④)

## 참고2

# 「금융그룹 감독 협의체」 구성 · 운영안

### 1 금융그룹 감독 협의체 (연 1회 이상)

- 통합감독정책 수립, 주요 위험요인 점검, 감독업무 조정 등



### 2 금융그룹별 감독부서 실무협의체 (분기 1회 이상)

- 금융그룹별 통합감독 진행상황 공유 · 점검, 그룹별 주요 위험요인 · 현안, 금융그룹 위험관리체계 평가 · 점검 등 논의\*

\* 회의 논의사항 중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'금융그룹 감독 협의체'에 보고

